강릉 송정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 당 아파트는 2017.09.20. 이후 일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11.17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 본 아파트는 2015.04.01.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85㎡이하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주택이 당첨자를 선정하는『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2017.09.20. 개정된 제28조 제4항에 따라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동조 제2항에 의거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40%만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 2017.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 2017.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2017.9.20 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2017.9.20 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강릉시)는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 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7.09.20)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 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강릉시)는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 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 (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비행안전6구역에 위치한 항공기 운항지역으로 항공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 남측(남대천 건너편)에 강릉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여 냄새 등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17)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강릉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 고령자와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17)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3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 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청약접수 기간 중 은행 서버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강릉시 건축과 - 51818호(2017.11.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1028번지 외 18필지 **■ 대지면적** : 25,314.0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18층 8개동 총 47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 604대, 세대당 1.26대)** [특별공급세대 총 135세대 : 일반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3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9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2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 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저층 우선 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계		계	특별공급				일반분양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기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주택	2017001568-01	75.9722	75	75.9722	23.0374	99.0096	28.2704	127.2800	46.6506	166	16	16	16	4	114	10
	2017001568-02	84.9522	84	84.9522	25.4622	110.4144	31.6120	142.0264	52.1648	237	23	23	23	7	161	17
	2017001568-03	105.5545	105	105.5545	31.1597	136.7142	39.2786	175.9928	64.8156	15	-	1	-	-	14	1
	2017001568-04	109.4950	109	109.4950	31.4434	140.9384	40.7450	181.6834	67.2352	59	-	5	-	1	53	4
계										477	39	45	39	12	342	3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세대)

타입	층별 구분	동·호수 구분	공급 세대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시
								계약시	계약후 30일	2018.04.15	2018.08.15	2018.12.15	2019.05.15	2019.09.15	2020.01.15	
75	2층	101동2호/102동2호/103동1,2호	4	29,648,000	199,352,000	-	229,000,000	10,000,000	1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68,700,000
		106동3,4호/107동3,4호/108동3,4호	6	29,648,000	201,352,000	-	231,000,000	10,000,000	1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69,300,000
	3~4층	101동2,3호/102동2,3호/103동1,2호	12	29,648,000	202,352,000	-	232,000,000	10,000,000	1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69,600,000
		106동3,4호/107동3,4호/108동3,4호	12	29,648,000	204,352,000	-	234,000,000	10,000,000	1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70,200,000
	5층~최상층	101동2,3호/102동2,3호/103동1,2호	78	29,648,000	205,352,000	-	235,000,000	10,000,000	1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70,500,000
		106동3,4호/107동3,4호/108동3,4호	54	29,648,000	207,352,000	-	237,000,000	10,000,000	1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71,100,000
84	2층	101동1호/102동4,5호/103동3,4호/ 104동1,2호/106동1,2호/107동1,2호/108동2호	12	33,152,000	217,848,000	-	251,000,000	10,000,000	1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75,300,000
		102동1호/106동5,6호/107동5,6호	5	33,152,000	219,848,000	-	253,000,000	10,000,000	15,300,000	25,300,000	25,300,000	25,300,000	25,300,000	25,300,000	25,300,000	75,900,000
	3~4층	101동1호/102동4,5호/103동3,4호/ 104동1,2호/106동1,2호/107동1,2호/108동1,2호	26	33,152,000	220,848,000	-	254,000,000	10,000,000	1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76,200,000
		102동1호/106동5,6호/107동5,6호	10	33,152,000	222,848,000	-	256,000,000	10,000,000	1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76,800,000
	5층~최상층	101동1호/102동4,5호/103동3,4호/ 104동1,2호/106동1,2호/107동1,2호/108동1,2호	128	33,152,000	223,848,000	-	257,000,000	10,000,000	15,700,000	25,700,000	25,700,000	25,700,000	25,700,000	25,700,000	25,700,000	77,100,000
		102동1호/106동5,6호/107동5,6호	56	33,152,000	225,848,000	-	259,000,000	10,000,000	1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77,700,000
105	2층	105동3호	1	41,192,000	288,007,000	28,801,000	358,000,000	15,000,000	20,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107,400,000
	3~4층	105동3호	2	41,192,000	291,644,000	29,164,000	362,000,000	15,000,000	21,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5층~최상층	105동3호	12	41,192,000	295,280,000	29,528,000	366,000,000	15,000,000	21,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109,800,000
109	2층	105동1,2,4,5호	4	42,730,000	282,064,000	28,206,000	353,000,000	15,000,000	20,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105,900,000
	3~4층	105동1,2,4,5호	8	42,730,000	285,700,000	28,570,000	357,000,000	15,000,000	20,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107,100,000
	5층~최상층	105동1,2,4,5호	47	42,730,000	289,336,000	28,934,000	361,000,000	15,000,000	21,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108,300,000

※ 면적합산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2017.09.2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향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옵션 선택은 청약당첨자 분양 계약 시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팬트리 등) 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청약당첨자 분양 계약 시 선택가능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지적정리와 대지면적 확정 및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또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당 사업장은 각 동별 1층이 필로티 또는 주민시설 등으로 이용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잔대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은행 익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망)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잔금만 별도 선납하셔도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중도금부터 순서대로 처리됩니다)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알선해드린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정일에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본 주택의 분양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무이자 적용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중도금무이자 적용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 부과 예정입니다.

2.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일반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다자녀특별공급 / 신혼부부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구 분		일자	시간	장소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일자	2017.11.22 (수)	10:00 ~ 14:00	강릉 송정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견본주택
	당첨자 선정 / 공고	2017.11.22 (수)	17:00	

※ 특별공급 청약 과열로 서류심사가 지체될 경우 당첨자 선정 시간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으로서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17,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 및 제8호(제35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국가유공자, 장애인 등)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가능한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 [기관추천(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신혼부부/다자녀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가능한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을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 (동 · 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신청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므로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합니다.(무작위 결정, 미신청·미계약 동·호수 발생시에도 동·호수 변경 불가)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75타입	84타입	105타입	109타입	합계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16	23	0	0	3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강릉시, 강원도 거주자	16	23	1	5	45
신혼부부 특별공급	강릉시, 강원도 거주자	16	23	0	0	3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강릉시, 강원도 거주자	4	7	0	1	12
소계		52	76	1	6	135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건설량의 10% 이내) : 3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장기복무군인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 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 특별공급대상자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해 선정합니다. 단, 해당기관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추천)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주택건설량의 10% 이내) : 4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두신 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임신중에 있는 태아도 포함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태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이상	5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와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신청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건설량의 10% 이내) : 3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및 강원도지역에 거주 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청 자료)

구 분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월평균소득액(100%)	4,929,384원이하	5,630,275원이하	5,630,275원이하
배우자 소득 합산(120%이내)	5,915,261원이하	6,756,330원이하	6,756,330원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합니다.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 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주택건설량의 3% 이내) : 1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 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합니다. (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접수장소에 비치
	○		무주택 입증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위임장	본인	대리신청시 (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함) - 위임장은 접수장소 비치
		○	인감도장(공급신청자)		
		○	인감증명서(공급신청자)		
		○	신분증(공급신청자)		
		○	도장, 신분증(대리인)		
일반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등 기타서류로 청약신청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피부양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이혼/재혼한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신청자가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 된지 5년이 경과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접수 장소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 ~ 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2) 2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 계좌 개설자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 하신 분(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신청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인터넷청약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17)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강릉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강릉시, 강원도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강릉시, 강원도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강릉시 및 강원도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가능. (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분	강릉시	강원도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500만원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강릉시 및 강원도 거주자	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2017. 9. 20 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2순위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강릉시, 강원도 거주자 포함)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분] / 추첨제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청약신청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다자녀가구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 동별 · 호별 ·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하되,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합니다.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 합니다.
   ※ 가점제 / 추첨제 대상 세대수 (일반공급, 1순위)

구 분	일반공급(100%)	가점제(40%)	추첨제(60%)
75, 84타입	275세대	110세대	165세대
105, 109타입	67세대	0세대	67세대
계	342세대	110세대	232세대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가점제, 주택소유관련, 당첨자 선정방법 등)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가입 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구비서류
①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관한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간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한다.